

"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고용노동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수신 관내 사업주 단체 대표 귀하  
(경유)

제목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홍보 협조 요청

- 고용노동 행정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고용량의 대량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수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사업)은 30명 이상 이직 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사업)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이직 시'
-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홍보 협조를 요청하오니 불임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시 활용하는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문 및 신고서 각 1부. 끝.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팀장	김진아	과장	전결 2022.3.7. 김수복
협조자			
시행	지역협력과-988	(2022. 3. 7.)	접수
우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1층 지역협력과 ( 가능동 754 신동 / 아파라디움) / www.moel.go.kr/uijeongbu		
전화번호	031-828-0849	팩스번호	050882300191 / jinaeye@korea.kr / 대국민 공개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붙임 1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문(안)

-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 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 서비스 유형

#### 《 제공서비스 유형 》

- ▶ 고용유지(안정), 전직 및 재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창출 장려금 등 기업지원, 실업급여·용자 등 근로자 생활안정, 심리안정지원, 노사협의, 기업회생, 임금체계 개편 등 컨설팅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 《 신고 사업장별 주요 제공서비스 》

- ▶ **(경영악화 사업장)** 고용유지, 이직지원, 기업회생 위한 금융지원, 사업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등 타부처 사업 연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고용위기지원 컨설팅사업' 등에 집중
- ▶ **(폐업(예정) 사업장)** 실업급여·생활안정용자 등 퇴직자 생활안정,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집중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신고내용	근로자 수	남	여
	총원	명	명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유		
	이직자 수	남	여
	총원	명	명
	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1개월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명 이상,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일 30일 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본 안내문과 신고서는 의정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uijeongbu](http://www.moel.go.kr/uijeongbu))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